2024

산업기술국제협력
시행계획 사업설명회

2024. 01. 25.

산업통상자원부

beyond leading technology KIAT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4 산업기술국제협력 사업설명회 일정

2024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공고 안내

시간	주요내용
15:00-15:10	• 국제협력사업실장 인사말
15:10-16:00	• 2024년 산업기술국제협력 국내외 접수 일정 등 안내
16:00-16:30	• 질의응답

유로스타3 6차 공고 안내

시간	주요내용
16:40-17:00	• 유로스타3 6차 공고 접수일정 및 방법 / K-TAG 사전컨설팅 제도 안내
17:00-17:30	• 유로스타3 영문제안서 작성 방법
17:30-18:00	• 질의응답

Contents

01 | 사업개요

02 | 세부 유형별 지원 절차

03 | 공통사항

04 | 신청 방법 및 접수

05 | 평가 절차 및 기준

06 | 질의 응답

01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하여 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고도화

2 사업 내용

2024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의 구분

구분	주요내용
양자 공동펀딩형R&D	• 양국 정부간 합의한 협력국가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다자 공동펀딩형R&D	• 다자 R&D 프로그램 참여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 운영기관에서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내 자금 지원
전략기술형 R&D*	• 국내 산업계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선도기관과 다각적인 기술협력을 유도하는 전략적 공동기술개발 과제에 자금 지원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R&D*	• 해외 최우수 연구기관 내 한국과의 협력거점으로서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과제를 발굴하여, 글로벌 산학연 컨소시엄의 공동연구과제에 자금 지원

* “전략기술형 R&D”,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R&D”의 경우, 별도 공고 및 설명회 개최 예정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기간 및 신청자격

양국 정부간 협의 기반 공고

대상국가		지원규모	지원기간	국내 연구개발 컨소시엄 (영리기업 1개 이상 반드시 참여 필수)	
				국내주관기관자격	국내참여기관자격
독일	(AiF)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제한없음	제한없음 (영리기업 참여 필수)
	(2+2)	3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제한없음 (기업+대학/연구기관 형태로 2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러시아		2억원 이내/년	2년 이내	중소·중견기업	제한없음
스위스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제한없음	제한없음 (영리기업 참여 필수)
인도		2.5억원 이내/년	2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중국		2억원 이내/년	2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체코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캐나다		2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영국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스페인		10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중소·중견	제한없음
미국		6억원 이내/년	3년 이내	공공연구소	제한없음 (영리기업 참여 필수)
이스라엘		최대 500만불 이내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 지원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 이스라엘과의 공동R&D는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www.koril.org)으로 문의
*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자격이 '제한 없음'이라 하더라도 국내주관/참여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스위스의 경우, 전체 컨소시엄(국내+스위스) 내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1개 이상 참여 필수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기간 및 신청자격

유럽 다자간 공동펀딩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국가

대상국가	지원규모	지원기간	국내 연구개발 컨소시움 (영리기업 1개 이상 반드시 참여 필수)	
			국내주관연구개발 기관자격	국내공동연구개발 기관자격
프랑스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R&D플랫폼별 기준을 따름	
싱가포르				
네덜란드				
덴마크				

* 지원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의 경우 다자 공동 펀딩형 R&D플랫폼을 통해서 지원 가능
*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자격이 '제한 없음'이라 하더라도 국내주관/참여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함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기간 및 신청자격

다자 공동R&D 프로그램별 지원내용

프로그램	대상국가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자격	
				중앙 사무국	국내
유레카 네트워크 유레카 클러스터	프로그램별 참여국	과제당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 참여국 2개 이상 국가, 2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	• 국내 컨소시엄 내 영리기업 참여 필수
유로스타3				• 총괄주관(Main Partner)이 유로스타3 참여국의 혁신중소기업* • EU 회원국 또는 Horizon Europe 준회원국 최소 1개국 참여 필수	• 국내 컨소시엄 내 영리기업 참여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
메라넷3				• 참여국 최소 3개국에서 총 3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 • EU 회원국 또는 Horizon Europe 준회원국 최소 2개국 참여 필수	• 국내 컨소시엄 내 영리기업 참여 필수
호라이즌 유럽				• 참여국 최소 3개국에서 총 3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 • EU 회원국 또는 Horizon Europe 준회원국 최소 2개국 참여 필수 * EU 회원국은 최소 1개국 참여 필수	• 국내 컨소시엄 내 영리기업 참여 필수 • 혁신(Innovation Action, IA) 및 연구혁신(Research & Innovation Action, RIA)에 한해 지원

* 지원예산 및 지원기간은 명시된 조건 이내에서 지원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유레카) 기타 지원조건 관련, 유레카 가이드라인 참조
* (유로스타3) 혁신중소기업(Innovative SME) 및 기타 지원조건 관련, 유로스타3 가이드라인 참조
* (메라넷3) 기타 지원조건 관련, 메라넷3 가이드라인 참조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기간 및 신청자격

다자 공동R&D 프로그램별 참여국 현황

유레카 참여국(46개국)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공화국,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싸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체코, 칠레, 캐나다,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유로스타3 참여국(37개국)

- EU 회원국(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 호라이즌유럽 준회원국(5개국) 노르웨이, 이스라엘, 터키, 아이슬란드, 영국
- 기타(6개국) 한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스위스

메라넷3 참여국(35개국)

- EU 회원국(25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 호라이즌유럽 준회원국(5개국)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노르웨이, 터키, 보스니아
- 기타(5개국) 한국, 브라질,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

호라이즌유럽 참여국(44개국)

- EU 회원국(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 호라이즌유럽 준회원국(17개국)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보스니아, 패로제도, 조지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코소보, 몰도바,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세르비아, 튀니지,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4 사업 추진체계

양자 공동펀딩형 R&D

- 상대국 전문기관 : 네덜란드(RVO), 덴마크(IFD), 독일(AiF), 독일(2+2)(DLR), 러시아(FASIE), 스위스(INNOSUISSE), 스페인(CDTI), 싱가포르(EnterpriseSG, A*STAR), 영국(Innovate UK), 인도(GITA), 중국(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CSTEC)), 체코(TACR), 캐나다(NRC), 프랑스(Bpifrance)

* 미국의 경우 지정된 전문기관이 없으며, 미국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기관이거나 美연방기관과 공동 R&D를 수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이스라엘과의 협력사업은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 재단(www.koril.org)으로 문의

4 사업 추진체계

다자 공동펀딩형 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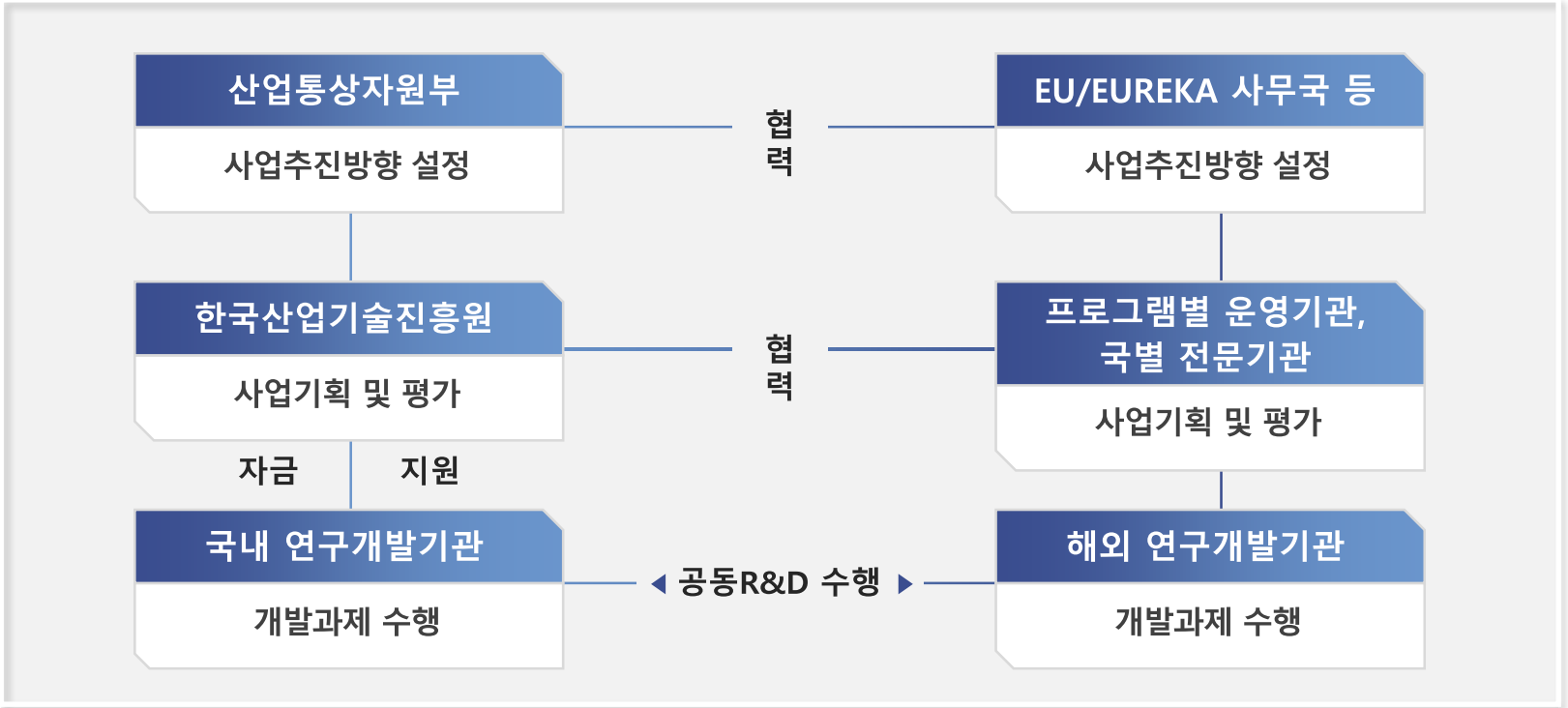

* 유럽 다자간 공동펀딩 R&D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체계 및 절차는 상이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02 세부 유형별 지원 절차

1 양자 공동펀딩형 R&D :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스페인, 체코, 네덜란드, 덴마크,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인도, 미국, 이스라엘 (14개국)

1 지원 절차

■ 상대국 지원절차는 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영문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국별 지원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양측 접수 마감일 등을 반드시 확인 후 한국과 상대국 양쪽 모두 접수 요망

양자공동펀딩형 R&D(정부간 합의국가) 추진 절차

사업 공고	(한국) www.kiat.or.kr, www.k-pass.kr (상대국) 전담기관 홈페이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한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pass.kr (상대국) 상대국 과제접수시스템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양국 공통 접수된 과제만 평가 (양국 전문기관간 과제정보 공유) 양국 전문기관 각자 평가 실시 (각국의 평가방식 적용) ※ (스페인) Peer Review등을 활용하여 양국 공동평가 실시
지원대상과제 확정	개별국 평가결과에 따라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지원우선순위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각국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2 지원 일정

대상국가	접수마감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독일(AiF)	'24.04.25(목) 16:00	~'24년 9월	'24년 10월	'24년 11월
독일(2+2)	상대국 일정 협의 중			
스위스	'24.05.24(금) 16:00	~'24년 7월	'24년 8월	'24년 8월
스페인	'24.04.25(목) 16:00	~'24년 6월	'24년 7월	'24년 9월
미국	'24.04.30(화) 16:00	~'24년 6월	'24년 7월	'24년 9월
캐나다	'24.06.12(수) 16:00	~'24년 8월	~'24년 9월	~'24년 10월
체코	상대국 일정 협의 중			
영국	연내 별도 공고 예정			
프랑스,네덜란드 덴마크,싱가포르	다자 공동펀딩형 R&D 플랫폼을 통해 접수			

* 중국, 러시아, 인도의 경우 미정으로 추진시 별도 공고문에서 상세 내용 참조 요망
* 이스라엘은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 재단(www.koril.org)에서 별도 공고 추진
* 상기일정은 전문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분야

국 가	지원 분야
독일(AiF)	산업 全 분야 지원가능
독일(2+2)	① Robotics ② Semi-conductor
스위스	산업 全 분야 지원가능 (단, 평가시 하기 분야에 대해 우대) ① Biotech; Medtech ② Renewable Energy & Batteries ③ Digitalisation; Industry 4.0; IoT, AI ④ Additive Manufacturing ⑤ Smart Materials/Innovative Surfaces ⑥ AR; VR ⑦ Hydrogen Technologies
스페인	① Renewable Energy ② Hydrogen ③ Energy Storage

* 국방 및 임상실험을 포함하는 의료분야 연구는 지원하지 않음

** 그 외 국가는 지원 분야 미정으로 추진 시 별도 공고문 게시 예정

3 지원분야

국 가	지원 분야
캐나다	① Advanced Manufacturing(smart factory and smart manufacturing, advanced materials, automotive manufacturing, robotics and automation) ② Health&bio-sciences(pharmaceuticals, digital health, medical devices and mobile health) ③ Digital Technologies(AI for industry, cyber security, and smart vehicle, smart city) ④ Clean Technologies(water and waste water management, smart grid and energy storage, battery-related technologies, renewable energy, and hydrogen technologies) ⑤ Quantum Technologies

* 국방 및 임상실험을 포함하는 의료분야 연구는 지원하지 않음

** 그 외 국가는 지원 분야 미정으로 추진 시 별도 공고문 게시 예정

3 지원분야

국 가	지원 분야
체코	산업 全 분야 지원가능 (단, 평가시 하기 분야에 대해 우대) ① Green car and automobile parts ② Green Machinery ③ Electronics/Electrical engineering ④ ICT(including cybersecurity) ⑤ AI ⑥ Robotics and cybernetics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다자 공동펀딩형 R&D 의 3. 지원분야 (24 페이지)” 참고 필요

* 국방 및 임상실험을 포함하는 의료분야 연구는 지원하지 않음

** 그 외 국가는 지원 분야 미정으로 추진 시 별도 공고문 게시 예정

2 다자 공동펀딩형 R&D : 유레카, 유로스타3, 메라넷3, 호라이즌유럽

1 지원절차

■ 지원절차는 프로그램 및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별 추진 절차]를 반드시 참고하여 각각의 지원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다자 공동펀딩형 R&D 추진 절차

사업공고	(한국) www.kiat.or.kr, www.k-pass.kr (중앙) 각 다자 프로그램별 홈페이지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네트워크) 유레카 사무국 및 KIAT (클러스터/메라넷/호라이즌유럽) 프로그램별 사무국
중앙 평가*	프로그램별 중앙 평가 실시 (유레카 네트워크의 경우 해당 없음)
(국내) 국문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중앙 평가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국내 접수 가능 (www.k-pass.kr)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네트워크) 각 국에 공통 접수된 과제에 한해 평가 (클러스터/메라넷/호라이즌유럽) 중앙 평가 결과 지원 가능 과제에 한해 평가
지원대상과제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프로그램별 사무국-컨소시엄, 연구개발기관 간 협약 체결 및 자금 지원

- 영문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기관별 연구개발비(Total Cost)는 국내 기준의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일체)와 동일하여야함

2 다자 공동펀딩형 R&D : 유레카, 유로스타, 메라넷, 호라이즌 유럽

1 지원 절차

■ 다자 R&D 프로그램 (유레카, 유로스타3, 메라넷3, 호라이즌유럽) 참여국 간 산·학·연 국제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며, 한국 포함 2개국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접수

다자 공동R&D 프로그램별 접수 절차

프로그램		유레카(EUREKA)		유로스타3 (EUROSTARS3)	메라넷3 (M-ERA.NET3)	호라이즌 유럽 (HORIZON EUROPE)
		네트워크 (NETWORK)	클러스터 (CLUSTERS)			
과제 접수	1단계 ⬇ 2단계	유레카 사무국 및 KIAT	각 클러스터 사무국	유로스타 사무국	메라넷 사무국	EU 집행위
		-	한국 전문기관(KIAT)*			
접수기간		연 2회	클러스터별 상이, 국내 접수 연 2회	연 2회	연 1회	연 1회
평가방식		각국 평가 후 유레카 총회 승인	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해 2단계 접수 후 국내 평가			

* 1단계 접수 전, 국내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함

* 2단계 접수(국내 접수)는 중앙평가 결과 '지원 가능' 과제만 가능하며, 그 일정은 프로그램별로 상이함. 국내 접수 시 영문 및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이 필수임

2 지원 일정

* 하기 프로그램별 일정(협약체결 포함)은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결과는 국내 접수마감일로부터 1년간 유효, 유효기간 內 해외 평가결과 미 도출시 선정 제외 가능)

1 유레카 네트워크 (Eureka Network)

구분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국내 접수 일정			
			접수마감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일반	상반기	상시	~'24.04.30(화) 16:00	'24년 5월	'24년 6월	'24년 7월
	하반기	상시	~'24.09.30(월) 16:00	'24년 10월	'24년 11월	'24년 12월
주제별	퀀텀 (Applied Quantum)	~'24.05.09(목) 16:00(CEST)	~'24.05.10(금) 16:00	'24년 5월	'24년 11월	'24년 12월
	경량화 (Lightweighting)	미정 (추진 시 별도 공고 예정)				
국가별	한-프랑스	~'24.06.27(목) 16:00(CEST)	~'24.06.28(금) 16:00	'24년 7월	'24년 8월	'24년 10월~12월
	한-싱가포르	~'24.06.27(목) 16:00(CEST)	~'24.06.28(금) 16:00	'24년 7월	'24년 8월	'24년 10월~12월

* 중앙사무국 접수방법 : 과제접수 플랫폼(https://eureka.smartsimple.ie/) 가입 후, 영문연구개발계획서 (Eureka Application Form)를 작성하고 전자 서명 후 제출

* 중앙사무국 접수 후, 작성된 영문연구개발계획서를 pdf 형식파일로 내려받아 국내 접수 시 제출 필수

2 지원 일정

* 하기 프로그램별 일정(협약체결 포함)은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결과는 국내 접수마감일로부터 1년간 유효, 유효기간 內 해외 평가결과 미 도출시 선정 제외 가능)

2 유레카 클러스터 (Eureka Clusters)

구분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국내 접수 일정			
		접수마감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상반기	클러스터별 중앙접수 일정표 참조	~'24.04.30(화) 16:00	'24년 5월	'24년 6월	'24년 7월
하반기		~'24.09.30(월) 16:00	'24년 10월	'24년 11월	'24년 12월

클러스터별 중앙접수 일정표

클러스터	접수절차		접수일정
	접수	단계	
CELTIC-NEXT	연 2회	-	(1회차) '24.05.03(금) (CET) 마감 (상세일정 추후 영문 홈페이지 참조) (2회차) 미정, 추후 영문홈페이지 참고
ITEA4	연 1회	1단계 (PO 접수) ⬇ 2단계 (FPP 접수)	(PO) '23.11.13(월) 17:00(CET) 마감 ➡ (FPP) '24.02.19(월) 17:00(CET) 마감
SMART	연 1회		(PO) '24.01.22(월) 11:00(CET) 마감 ➡ (FPP) '24.04.22(월) 11:00(CEST) 마감
EUROGIA 2030	연 4회		(1회차) '24.03월 (CET) 마감 (상세일정 추후 영문홈페이지 참조) (2/3/4회차) 미정, 추후 영문홈페이지 참고 ※ 먼저 PO를 접수하여 통과 후, 다음 회차에 FPP 접수 가능
Xecs	연 1회		(PO) '24.01.18(목) 17:00(CET) 마감 ➡ (FPP) '24.04.18(목) 17:00(CEST) 마감

2 지원 일정

* 하기 프로그램별 일정(협약체결 포함)은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결과는 국내 접수마감일로부터 1년간 유효, 유효기간 內 해외 평가결과 미 도출시 선정 제외 가능)

3 유로스타 (Eurostars 3)

구분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국내 일정			
		접수마감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Call 6	~'24.03.14(목) 14:00(CET)	~'24년 8월	'24년 9월	'24년 10월	'24년 10월
Call 7	~'24.09.12(목) 14:00(CET)	미정 ('25년 별도 안내 예정)			

* 유로스타 사무국 중앙평가 선정 확정 과제에 한해 국내 접수 세부일정 별도 안내

4 메라넷 (M-ERA.Net 3)

구분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국내 일정			
	Pre-proposal	Full-proposal	접수마감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Call 2023	~'23.05.16(화) 12:00(CEST)	~'23.11.21(화) 12:00(CET)	~'24년 2월	'24년 3월	'24년 4월	'24년 4월
Call 2024	~'24.05.14(화)	~'24.11월	미정 ('25년 공고 예정)			

* 메라넷 사무국 중앙평가 선정 확정 과제에 한해 국내 접수 세부일정 별도 안내

2 지원 일정

* 하기 프로그램별 일정(협약체결 포함)은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결과는 국내 접수마감일로부터 1년간 유효, 유효기간 內 해외 평가결과 미 도출시 선정 제외 가능)

5 호라이즌 유럽 (Horizon Europe)

구분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국내 일정			
		접수마감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상반기	EU집행위 공고별 상이	~'24.04.30(화) 16:00	'24년 5월	'24년 6월	'24년 7월~
하반기		~'24.09.30(월) 16:00	'24년 10월	'24년 11월	'24년 12월~

* EU집행위 중앙평가에 선정된 확정 과제만 국내(KIAT) 접수 가능하며, 과제 활동유형(Types of Action)은 혁신활동(Innovation Action, TRL 6~8) 및 연구혁신활동(Research & Innovation Action, TRL 2~6)를 지원함

3 지원분야

■ 산업 全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특정 분야로 한정되는 경우로 구분

<table>
<tr><th colspan="2">프로그램</th><th>지원 분야</th></tr>
<tr><td rowspan="5">유레카
네트워크</td><td>일반</td><td>산업 全 분야
-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td></tr>
<tr><td>퀀텀</td><td>퀀텀 기술(Quantum Technologies)이 적용되는 산업 全 분야
-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
- (참여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싱가포르, 대한민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영국</td></tr>
<tr><td>경량화
(공고 일정 미정)</td><td>경량화 기술(Lightweighting Technologies) 산업 全 분야
-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 공고문 참조</td></tr>
<tr><td>한-프랑스</td><td>산업 全 분야
-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td></tr>
<tr><td>한-싱가포르</td><td>산업 全 분야
-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td></tr>
<tr><td colspan="2">유레카 클러스터</td><td>클러스터 사무국 별 해당 중점 협력 분야
<table>
<tr><th>사무국</th><th>CELTIC-NEXT</th><th>EUROGIA2030</th><th>ITEA4</th><th>Xecs</th><th>SMART</th></tr>
<tr><td>기술분야</td><td>통신네트워크
및 서비스</td><td>저탄소·친환경
에너지</td><td>S/W
및 서비스</td><td>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td><td>스마트
제조</td></tr>
</table></td></tr>
<tr><td colspan="2">유로스타</td><td>산업 全 분야
-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td></tr>
<tr><td colspan="2">메라넷</td><td>'24년도 메라넷3 중점 협력분야
<table>
<tr><th>Topic1</th><th>Topic2</th><th>Topic3</th><th>Topic4</th><th>Topic5</th><th>Topic6</th></tr>
<tr><td>지속가능한
에너지소재</td><td>표면처리 및
코팅</td><td>고성능
복합체</td><td>기능성 소재</td><td>차세대
전자 소재</td><td>친환경 소재</td></tr>
</table></td></tr>
<tr><td colspan="2">호라이즌 유럽</td><td>산업 全 분야
-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td></tr>
</table>

03 공통사항

1 지원대상(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2 지원 조건

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 할 수 있음)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연구개발기관[1]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수요기업[5]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개발기업임

2 지원 조건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과제 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수요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하고 세부 사항은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1조를 따름

04 신청방법 및 접수처

1 신청 방법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접수처 : www.k-pass.kr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① 통합회원가입 : 총괄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s://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연구개발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s://www.k-pass.kr)을 통해 총괄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연구개발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 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s://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 접수 완료 확인(제출 불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완료 및 제출 요망. 또한, **안내된 전산접수 마감일 시각 이후 전산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총괄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 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必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05 평가 절차 및 기준

1 평가 및 협약체결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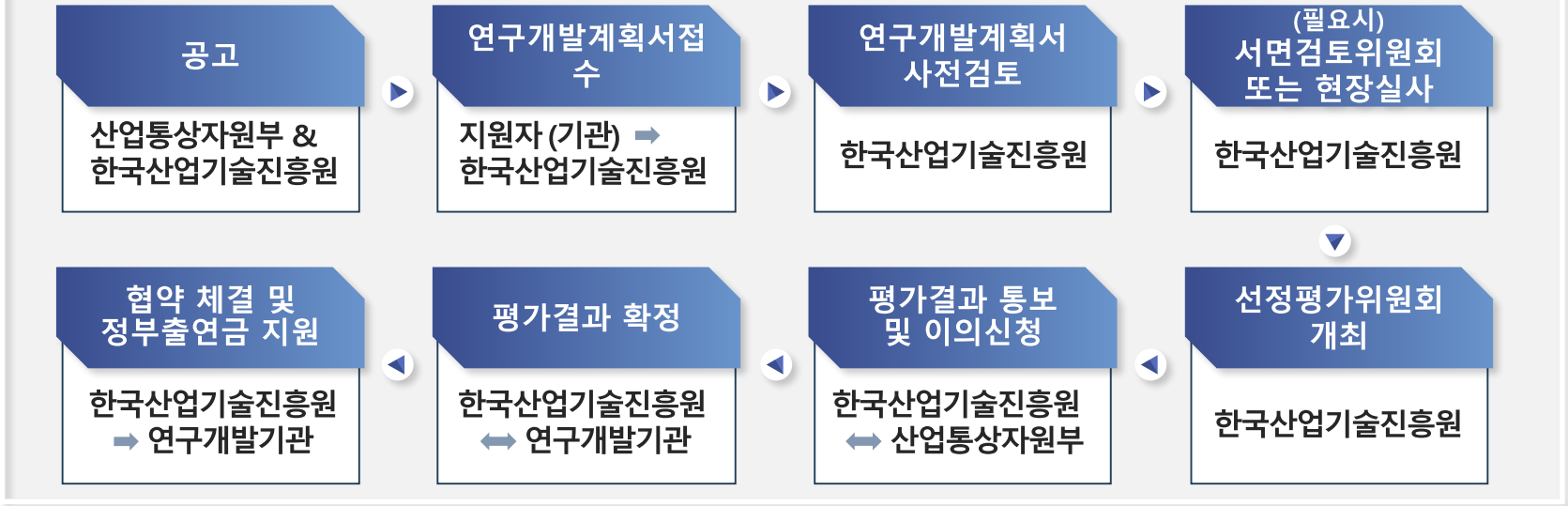

* 상대국의 평가 결과 및 협의 결과를 포함하여 보고

* 일정은 추진상황 및 상대국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검토를 거친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국제계약서'와 '변호사 검토의견서'를 평가결과 확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스페인 과제**의 경우, **평가결과 확정 통보 후 18일 내**에 '국제계약서(양국 각각 제출)'와 '변호사 검토의견서(한국만 해당)' 제출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미리 준비 必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선진 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에 따른 선행기술과의 중복회피 전략을 포함해야 함. 필요시 총 수행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특허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함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2 평가 기준

선정평가지표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시장확대 가능성	기술개발의 필요성	• 국제 공동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효과성(신시장 창출, 공급망 구축, 신기술 획득 등) (15) • 기존 기술개발 내용과의 차별성 (5)	20
기술전략의 타당성	개발목표의 명확성	• 국제공동 기술개발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 (10) • 국제공동기술개발 목표 달성 계획의 구체성 (10)	20
	개발내용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국제공동 기술개발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10) • 국제공동 개발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5)	15
	개발목표 설정의 타당성	• 성과 지표 구성 및 성과 목표 설정의 타당성 (10) - 사업화 매출액(수출액 포함), 고용 등 주요 지표 및 목표 수립의 타당성	10
연구 수행능력의 타당성	컨소시엄 구성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 국내외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5) • 국내외 수행기관별 세부 역할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10)	15
시장진출의 타당성 및 효과성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 사업화 추진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5) • 지식재산권 확보 계획 및 기술적, 경제적 기여도 (5)	10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 기술개발을 통한 매출(국내매출, 수출) 향상 가능성 및 수입대체효과, 산업의 기술향상정도 등 산업 전반의 파급 효과 (5)	5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국내외 컨소시엄 수행기관 간 예산 배분의 적정성 및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5) - 국가간 예산비율의 적적성	5
합계			100

* 선정평가지표는 정책적 필요성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과제의 국내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일 때는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일 때는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사정 또는 상대국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유로스타 과제 : 유럽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의 경우 “지원대상”으로 하되, 사업계획 보완 및 연구개발비 타당성 중심으로 검토. 단, 예산사정 또는 정책방향, 국가간 협의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메라넷 과제 : 유럽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의 경우 “지원대상”으로 하되, 사업계획 보완 및 연구개발비 타당성 중심으로 검토. 단, 예산사정 또는 정책방향, 국가간 협의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06 질의 응답

감사합니다

산업기술국제협력 시행계획 사업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

beyond leading technology KIAT
한국산업기술진흥원